

# 會計監查基準上 獨立性에 관한 比較論的 研究

A Comparative Study on Impependence of Auditing Standard

李 尚 權\*  
(Lee, Sang Kwon)

## 目 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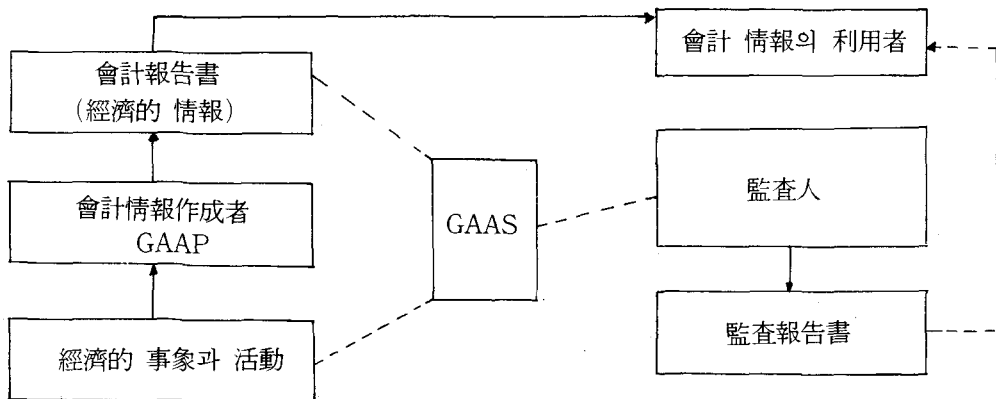
- |                                |                    |
|--------------------------------|--------------------|
| I. 序 論                         | 2. 客觀性的 先入觀 및 獨立性  |
| II. 獨立性的 概念                    | 3. 分명한 獨立性         |
| 1. 獨立性的 定義                     | 4. 財政的 獨立性         |
| 2. 獨立의 基礎原理                    | 5. 經營 諮問과 獨立性      |
| III. 會計監查上 獨立性에 관한<br>主要國間的 比較 | IV. 우리나라監查基準上的 獨立性 |
| 1. 獨立性的 要求                     | V. 結 論             |
|                                | 參考文獻               |

## I. 序 論

企業이 經營活動에 대한 情報을 不特定多數人에게 傳達하는 過程에서 社會의 複雜性이 多樣化해 질갈수록 情報危險은 높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그 危險을 減少시키고 目的適合한 經濟的 情報<sup>1)</sup>의 必要性을 提高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監査人에 대한 依存度가 높아지고 있다. 監査는 “經濟的 活動이나 事象에 대한 主張과 確立된 基準과 一致하는 程度를 判斷하고, 그들의 主張에 대한 證據를 客觀的으로 蒐集하여 評價함으로써 利害關係者인 利用者에게 그 結果를 傳達하는 體系의인 過程”이라고 定義할 수 있다.<sup>2)</sup> 그러므로 會計監査는 會計行爲의 最終段階인 동시에 會計基準의 守護者의 役割을 담당하게 된다.

결국 會計의 社會的 機能에 信賴性을 賦與하며 情報의 遠隔性,<sup>3)</sup> 提供者의 偏見과 動機, 방대한 資料 및 去來의 複雜性등에서 情報危險의 原因을 減少시키는 役割을 하는 것이 會計監査라 할 수 있다. 會計監査者는 情報의 作成者와 利用者 間에 現實的 또는 潛在的인 利害에 相衡이 생기지 않도록 情報의 質的評價도 하여야 하며, 이는 監査機能中 意思傳達過程에서 重要한 統合的 過程이 된다.

情報에 대한 質的 統制는 監査者의 獨立性이 維持되면서 檢討될수 있고, 會計情報의 作成者는 利用者의 要求에 附合해야 할 뿐만 아니라 實質的 獨立性, 專門的 知識과 豐富한 經驗에 관한 能力도 가져야 한다.



註 1) 目的適合한 經濟的 情報란 ASOBAT에 의하여 主張된 것으로 基本的인 會計情報의 基準으로서 情報促進活動이 기대되는 結果와 관련되고 그것과 有效하게 結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潛在的인 利用者의 情報에 대한 要求를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註 2) AAA, ASOBAC, P.2.

註 3) 會計情報의 利用者가 入手한 情報의 質에 대하여 結論을 내릴 能力이 없거나 信賴性이 낮은 情報가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 自己 스스로 情報의 質을 判斷하기 困難한 경우를 말한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利用者와 監査人은 相互信賴가 있어야 하고 利用者와 會計情報 作成者사이에는 理解關係가 形成되지 않아야 會計情報의 利用者는 會計의 基本的 意思傳達過程과 監査에 의한 意思傳達過程의 中心的 位置에 서게 된다. 會計情報作成者와 監査者도 不均衡한 權限의 構造關係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監査人의 獨立性이 維持되어 會計監査의 社會的 機能을 擔當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 監査人의 獨立性은 外形的 利害關係나 經濟的 獨立性 뿐만 아니라 監査를 實施하고 監査意見을 表明하는데 있어 公正不偏한 姿勢를 가지는 實質的 精神的 獨立性까지 包含하는 것이다.

一般的 會計情報作成者나 經營者는 自己의 主張이나 立場을 監査人에게 理解시키고 說得하려하고, 監査者는 會計情報의 效率性과 危險性 維持를 위하여 經營者를 納得시키려고 하는 過程에서 監査葛藤(audit conflict)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葛藤은 監査人과 被監査者와의 利害相衡, 被監査者와 會計情報 利用者와의 利害相反, 監査自體에서 發生되는 監査過程상의 問題點등에서 나타날 수 가 있다. 따라서 監査人이 公正不偏한 姿勢로 監査를 遂行하여 監査證據에 따라 監査意見을 表明하면 그로 인한 영향은 직접 被監査者에게 미치기 때문에 企業經營者는 監査人에게 影響力을 行使하려 할 것이고, 監査人은 職業倫理에 따라 監査業務에 正當한 注意의 義務를 다하려고 하는 過程에서 監査人의 獨立性에 대한 問題가 提起되는 것이다.

따라서 英國·美國·카나다 등의 감사인의 獨立性을 比較하여 監査制度의 運營에서 나타나는 獨立性의 問題를 考察하고자 한다.

## II. 獨立性의 概念

### 1. 獨立性의 定義

會計監査人은 情報利用者의 意思決定에 重要한 會計情報를 提供하는데 있어서 監査證據의 蒐集및 監査意見을 表明하는 데 非偏頗의인 客觀性을 維持하여야 한다. 따라서 企業의 財務狀態및 經營成果를 適正하게 表示하고 있는지의 與否에 대한 精神的 獨立性(independence in mental attitude)을 維持함으로써 監査意見을 表明한 것은 물론 監査節次및 過程에 대하여 情報利用者들이 認定하는 會計監査人의 獨立性이어야 한다. 監査實施나 監査意見에 대한 獨立性이 缺如되었다면 專門家로서 最上의 正當한 注意와 誠實性으로 能力을 發揮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혀 價値를 認定받을 수가 없고

會計監査人の 存在理由도 케멸될 것이다.

獨立性은 會計監査人이 維持해야 할 가장 根本的 要因으로 誠實(integrity)하고 客觀的(objectivity)으로 監査業務를 遂行할 수 있는 能力이다. 誠實性은 健全한 道德·規範·正直·誠實을 意味하고 客觀性은 會計監査業務를 偏見없이 不偏不當의 자세로 감사하는 能力을 意味한다.<sup>4)</sup> 사실상 7번째 國際會計協議會(Seventh International Congress on Accounting)에서도 많은 論文과 討論들이 會計職業(accounting profession)의 國際的 特性에 대하여 強調하면서 誠實性(integrity)과 獨立性(independence)을 根據로 삼고 있다. 그러나 實際로는 監査業務에 從事하는 監査者가 監査意見의 表示에 重要한 價値를 賦與하기 위하여 獨立性을 提高한다 하더라도 獨立性에 대한 定義를 規定하는 것에서나 實現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들이 存在한다.

일반적으로 American Institutes' committee on Professional Ethics의 前議長 Thomas G. Higgins가 獨立性의 本質을 說明한 것을 자주 인용하는 것을 볼수가 있다. 「CPA가 지녀야 할 獨立의 實際的인 두가지 種類, 사실(fact)적 獨立과 外面(appearance)的 獨立이 있다. 前者는 個人的 利益에 관한 事項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特定人 즉 CPA의 客觀性에 관하여 言及하고 있으며, 後者는 그 事實(fact)에서 大衆의 確信을 흔들리게 하는 傾向이 있는 關心의 潛在的 衝突로 부터의 自由를 意味」한다고 強調하였다.

1962年 獨立性에 대한 規定(declaration)에서 American Institute는 이를 採擇하여 “個人에서나 團體에서 또는 partner이거나 會社에서 監査者와 被監査者가 獨立된 事實(fact)에 있지 않다면 어떠한 財務諸表에 관한 意見도 表示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 있다. “事實에서 獨立”의 概念은 英國·美國·캐나다·濠洲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 나라 監査者의 專門性이 獨立性에서 監査者 個個人的 心的 態도와 性格의 特性에서 根幹을 같이 하고 있으며 그 一般의 一致點을 찾아 보면 다음과 같다.

(1) 獨立性(independence)은 그 自體가 正確한 正義에 適合하지 않고 個人的 專門的 誠實性(professional integrity)의 表現이다. (integrity는 特性·誠實·完全 그리고 正直의 正確性의 意味로 使用된다).

(2) 監査者는 結論이 무엇이든 간에 그가 事實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自身의 일에 관한 精神的 獨立性을 지녀야 한다.

(3) 監査者는 外觀에 의하여 判斷하지 않고 適當한 證據를 主張하는 마음가짐을 길러야 한다.

註 4) 宋梓·鄭鍾岩, 會計監査, 法文社, 1982. P.60.

(4) 自身の 意見を 主張함으로써 監査者の 다른 어떤 種類의 個人的 思考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5) 獨立性은 참된 自由에 관한 問題이고 法則이나 基準에 의하여 處理되어서는 안 된다.

(6) 모든 專門의 問題에 있어서 監査者는 環境의 本質이 要求하는 것처럼 大衆·顧客·協會 또는 職業에서 專門性의 表示는 個人的 觀心을 無視되어야 한다. 完全한 獨立은 監査者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自身이 監査할 것인가에 대한 完全한 自由를 누릴 수 있도록 要求하고 있는 것이다. 經濟的 抑壓과 社會的 責任 그리고 個人的 緣故關係는 監査에 대한 이러한 完全한 自由에 대항하여(때로는 복합적으로) 作用하게 될 수도 있다. sharaf와 Mautz는 실제로 완전한 獨立이 成就되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統制와 獨立은 분명히 外部의 抑壓없이 作用될 수가 있다는 것을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監査者의 個人的 先入觀이나 偏見, 그의 經濟的 또는 社會的 成功에 대한 欲望, 또는 타고난 소심함은 自身の 獨立性을 분명히 손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 2. 獨立의 原理

實際的 獨立이 만들어지고 維持되기 위한 原理(basis of independence)는 道德的 特性과 監査者의 個人的 能力이라는 것을 大體的으로 認定하고 있다. 캐나다 사람들은 獨立에 관련된 行動法規에 대한 概念을 縮小시키고 있다. “會員들은 協會와 會員들이 制定한 能力과 道德的 特性과 行動에 관한 基準들을 恒常 維持하여야 한다.” 美國의 觀點에서는 附隨的인 아닌 獨立的인 意味에서 獨立은 모든 職務를 實行(practice)하는데 있어서 必順不可缺하다.

이러한 概念의 體系의 構造는 美國의 一般的 會計監査基準의 制定에서 提示되고 있다. 技術的 能力에 관한 基準이 우선 言及되고 前者가 後者에 대한 條件的 先例라는 것을 表現하고 있다. 오스트렐리아의 觀點은 이러한 점에서 아주 強力하다. Asian과 Pacific Accountants에서 John L. Rawnsley의 演說에서 다음과 같은 論評을 하고 있다.

우리가 “그는 그 자신의 主人이 되어야 한다.”라는 表現을 考慮하여 볼 때 獨立에서의 適性에 관한 必順不可缺한 關係가 分明하게 된다...? 사람은 몇가지 特別한 適性·技巧·成就 또는 超越性에 대한 資質을 所有하고 있다; 知的統制와 支配力에 관한 暗示...? 그 사람의 理性下에 感情과 熱情과 行動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主

觀을 把握하면서...? 더우기 專門的 行動에 관한 이러한 法規를 大部分 그들이 專門的 知識을 높게 向上시키면서 職業의 獨立性을 強化시키려고 한다..... 各各의 專門家들은 그 自身의 能力을 蓄積시켜야 하고..... 그것으로 그의 獨立을 成就시켜야 한다.

獨立性은 知識과 慎重(respect)을 포용하는 技術의 所有와 대다수의 反對에 對항하는 健全한 確信을 기르는 힘, 높은 倫理的 基準들에 대한 認識, 그리고 結果에 대한 偏愛, 우유부단과 두려움의 除去를 要求하고 있다는 점에서 意見을 같이 하고 있다.

### Ⅲ. 會計監査上 獨立性에 관한 主要國間의 比較

英國·美國·캐나다·濠洲등 4國은 監査에 獨立性이 重要하다는 점을 強調하고 있다. John A. Wilson은 다음과 같이 要約하고 있다. 우리가 公共會計(public accountancy)의 過程에서 獨立性을 고립시키려고 할때 그것은 生物로 부터 숨쉬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 1. 獨立性의 要求

世界 各國의 어느 나라에서나 會計監査者의 獨立性이 重要하다는 것은 오랫동안 認定되어 왔다. 이는 많은 國際會議에서 結論적으로 強調되는 現象에서도 證明이 된다. 즉 다음과 같이 各各의 代表者 演說에서 찾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1952年 6차 International Congress에서 當時 American Institute 議長인 J. William Hope는 監査者는 自由가 위협받는 시대 뿐만 아니라 平和時代에서 存在하게 되는 바 賢明함으로 國家의 經濟를 지키고 生産性을 增大시키며 國家經濟를 크게 弱화시키며 不滿을 고조시킬 수 있는 要素를 줄이거나 없애줌으로서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專門的 獨立性을 열성적으로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母集團(population)에서 모든 複合的 要素가 依存할 수 있는 情報을 提供하는 獨立的 Agent의 地位(status)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어떤 個人的인 利益때문에 本來의 位置(integrity)를 벗어 난다면 效率性은 파괴되고 만다. 監査者에 대한 大衆(public)의 確信이 손상된다 하더라도 職業(profession)의 終末이 오지는 않지만 社會의 均衡이 維持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民主主義에서 必要不可缺한 社會의 各部門사이에서 協同精神을 결속하여 어렵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 2. 客觀性的 先入觀 및 獨立性

美國에서의 客觀성과 獨立성에 대한 研究는 活潑하게 展開되었는데, 그 예로서 American Institute는 監査者가 “그의 意見의 公式化(formulation) 내지 表現에서 正直한 公平性…… 그것은 그러한 意見의 決定要素들로서 決定要素에 대한 事實의인 偏見없는 判斷과 客觀的인 생각을 意味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皮력함으로서 1954년에 概念을 整理하였다. CPA가 自身의 判斷에 先入觀의 知覺을 가지고 拒絕하면서 會計的 事實에 대한 意見表明에 대하여 潛在意識의으로도 歪曲된 傾向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重要하다. 英國·美國·캐나다등의 나라에서는 獨立성이 客觀성을 손상시키거나 個人的 偏見으로 判斷에 影響을 주는 狀況을 回避하는 傾向이 一般的으로 一致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監査者가 스스로 얼마나 獨立的인가? 또한 그의 慎重한 判斷과 意見이 獨立的 行動과 精神的 態度的 結果인가를 監査者의 監査意見에 依存하는 投資者·債權者·去來處·政府 및 其他의 사람들은 어떤 基準으로 認識하고 있는가라는 疑問점이 제기된다.

英國에서는 獨立성을 決定하기 위한 어떤 確固하고도 早速한 規則의 設定을 期하여 왔다. 그 理由는 그것을 個人的 良心의 問題라고 主張하고 있다. 이러한 點들은 같은 理由로 오스트렐리아의 監査者들에게도 影響을 주어 Sir Thomas B. Robinson은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公認會計士는 關聯된 會社의 環境과 自身의 經驗과 判斷力으로 決定하고 特別한 경우에는 適切하게 그의 節次를 定한다. 우리는 관념적인 指示가 포함되는 內容이 그들의 獨立성을 侵害하지 않고 個人的 自由가 自由를 믿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良識이 健全한 發達과 公認會計士의 本質的 特性인 마음의 獨立을 確保하는 것이 가장 適合하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美國과 그밖의 나라들은 會計監査環境에서 獨立性的의 存在와 不在를 檢査(test)하고 多樣한 調査方法을 研究하여 財政的 關心과 心的 態度, 探究의 自由 그리고 組織的 狀況을 중심으로 하여 研究하고 있다.

SEC와 American Institute는 財政的 檢査(financial test)를 強調하고 있다. 이러한 團體들은 監査者가 監査하는 會社에 關心이 있거나 合法的인 상태에서 監査者의 心的 態度나 業務의 수행에 있어서 獨立성을 유지하기 위한 努力을 한다하여서 實質的 獨立성을 각기가 어렵다고 假定하고 있다. 따라서 AICPA도 制限된 效率성을 認定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心的 態度的 獨立성이 自身이 擔當하여야 할 業務에 關聯된 모든 問題를 解決하는데 스스로 維持시켜야 한다는 것을 우선적인 개념으로 統合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合法的으로 行하여지는 慣行에서 獨立성에 一致하는

것으로 認定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監査者가 獨立性이 있는 契約者(independent contractor)로서 業務進行에 防害를 받거나 支配를 받는데서 解放될 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Sharaf와 Mautz는 獨立性에 대한 많은 問題의 解決을 위하여 現在와 같은 方法들은 적합하지 못하고 실질적 獨立性을 決定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事項들을 提案하고 있다. 즉 다음의 세가지 제안과 先入見에서 自由로워진다면 완전히 獨立性을 維持할 수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計劃에서 獨立性(programming Independence) : 會計監査技術과 節次의 선택과 適用範圍에 대한 統制와 지나친 간섭으로부터 自由

② 調査에서 獨立性(investigative independence) : 調査된 範圍活動 個人的 關係 그리고 運營方針중에서 選擇에서의 과도한 영향력의 과시로부터의 자유

### 3. 分명한 獨立性

利害關係者들이 監査者의 獨立性을 認定하지 않는다면 監査者의 實質的 獨立은 별로 重要한 意味를 부여하지 않는다. Carmen G. Blough는 “會計監査者는 自身の 效率性이 獨立性이 결핍되면 利害關係者들은 監査活動과 結果에 대한 어떤 느낌으로 손상되기 때문에 事實에서 獨立性이 維持되어야 하고 獨立性을 결핍시키는 것을 피해야 할 責任感을 가지고 있다.

實際로 心的態度에서의 實質的 獨立은 會計監査活動과 監査意見에 대하여 要求되는 唯一한 特性이다. 效果의이고 實質的 價値가 되도록 會計監査報告가 이루어져서 利害關係者들에게 意思決定時에 存重되는 情報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財政的 獨立과 外觀上的 獨立은 最近에 總括的 概念에 重要視되어 왔다. 美國에서 監査者는 그의 心的 態度가 손상되지 않을것이라는 것을 保證하기 위하여 被監査者의 財政的 關心에서 自由로와야 한다. 따라서 Mautz와 Sharaf는 外觀上的 獨立과 實質的 獨立을 抑壓할 수 있는 要素를 指摘하고 있다.

- ① 分명한 財政的 信賴
- ② 은밀한 관계의 存在
- ③ 經營 Service에 대한 지나친 重要視
- ④ 特定된 大企業이 영향력을 과시하는 傾向
- ⑤ 專門的 連帶責任의 缺乏
- ⑥ 運營技術을 發揮하여 나타나는 傾向



上記의 事項중에서 ①②③을 관련지어서 整理하여 보고, ④는 美國과 다른 나라에서 아직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며, ⑤와 ⑥은 專門的 行動規範으로 規定하여 볼 수가 있을 것이다.

#### 4. 財政的 獨立性

監査者가 被監査者 사이에 財政的 問題로 美國에서 採擇된 立場은 SEC의 態度에 의하여 영향을 크게 받아 왔다. 즉 SEC Regulation S-X Rule 2.01(b)는 이를 證明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SEC는 資格이 있는 公認會計士가 實質的으로 獨立된 경우의 監査단을 認定한다. 예를 들어 監査期間동안 直接 또는 間接的으로 財政的 關係가 없으며, 母會社 또는 子會社사이 에서도 財政的 關係가 없이 獨立的 이기를 원하고 있다.

1964年 1月 1日에 採擇된 AICPA의 Independence Rule 1.01은 SEC의 立場과 一致하고 있다. 예를 들어 個人이나 단체로서 監査者가 監査契約 期間이나 監査意見을 表明하는 경우 監査者나 그의 파트너가 直接的 財政關係나 間接的이지만 實質的인 財政的 參與가 存在하였을 경우에는 獨立的인 姿勢로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獨立性을 決定하기 위한 基準에 대한 重要性은 一致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 獨立性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財政的 參與以外에 다른 要素도 있기 때문에 限界가 分明하다.

英國에서는 公式的으로 法規에 被監査者에 대한 財政的 獨立에 관하여서는 特別하게 規定하고 있지 않다. 監査者는 資格을 갖추게 되는 個人的 訓練이 財政的 關心으로부터 獨立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監査者가 被監査者와 사이에서 完全히 獨立될수 없을 것이라고 豫想된다면 그는 監査契約을 수락하거나 監査活動을 繼續하지 않을 것을 期待하고 있다. 즉 英國은 美國이 지나치게 複雜하게 많은 法規를 만드는 誤謬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見解도 있다.

일반적으로 會計監査者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公式的 態度에 관하여 England & Wales Chartered Accountants의 前議長이었던 Sir Henry Berson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여 監査者가 自身이 監査하는 어떠한 企業에서도 利益을 취하지 말아야 하고, 어느 친척도 그곳에 雇傭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租稅에 대한 勸告, 經營業務에 대한 Service와 같은 顧客을 위한 일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美國에서도 表現되고 있다…… 나는 이러한 모든 見解가 非現實的이고 堅強附會的이라고 믿고 있으며 監査者가 監査業務에서 專門的 知識을 適用시키기 前에 失敗를 誘發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캐나다에서는 監査者가 被監査者로부터 利益을 얻으면서 企業에 대한 財政的 關與를 公式的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 즉 Rule 8(1)에서는 會計監査者는 社會活動을 하는 한 個人으로서 獨立性을 維持해야 한다는 Rule 3(1)을 지키면서 組織의 安定性과 자신이나 同業者나 친인척들의 직·간접적으로 갖고 있는 財政的 關心에 대한 範圍를 벗어나지 않는 陳述을 한다면 負債額 또는 組織의 安定性에 대한 관심 또는 財政的 陳述에 대한 企業에 대한 物質的 關心(material interest)을 포함하는 構體的 關心을 內包할 수 있다.

위에서 規定된 內容은 監査者가 고객들에게 投資를 決定할수 있는 要素를 提供하는 반면에 Rule 3(1)은 이를 制限하는 巨視的 範圍로 보여진다. 會計監査者가 同業者나 친인척들에게 企業에 대한 合理的인 관찰자의 立場에서 獨立性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은 容認될수 있음을 指摘하고 있는 것이라 볼수가 있다.

오스트렐리아의 制度的 立場은 被監査者에 대한 投資에 신중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負債에 더욱더 엄격한 것으로 볼수가 있다. 즉 特定會社에 대하여 監査契約을 체결하기 전에 負債를 지지 않거나 500파운드(£)이상의 빚을 지지 않도록 明文化하고 있다. 모스트렐리아에서 論理的 立場을 展開하고 있는 學者들의 見解는 職業的 專門家는 그의 감사의뢰자로 부터 配當金을 받지 말고 그의 同業者들이나 補助員들도 그렇게 하지 않기를 期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要求는 公企業에 適用되지 않기를 期待하고 있으며 現在 오스트렐리아의 公認會計士의 約15%는 公企業의 重役으로 活動하고 있다. 그러므로 監査者는 公企業을 除外하고 監査對象企業의 임원이나 同業者, 僱傭主이거나 會社임원의 僱傭人 또는 심지어 同業者나 僱傭人의 僱傭人이 되어서도 안된다고 規制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公式的으로 英國·美國·濠洲보다는 그다지 重要하지 않게 記述되고 있다. Rule 37은 監査者가 被監査者와 事業的 關係 參與 其他 認知할 수 있는 關係등을 報告하여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專門家審議委員會(professional conduct committee)의 意見書17(opinion 17)은 監査者가 被監査者의 信託人처럼 行動하여서는 안된다고 規定하여 그 獨立性을 記述하고 있다.

英國의 경우는 會社法(company law)에서 會社의 重役이나 管理者 또는 會社의 僱傭人은 監査者로서 大體로 適合하지 않다고 規定하고 있다. 특히 家族會社의 形態가 아니라면 會計監査者가 同業者나 管理人 또는 管理人의 僱傭人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理由로 監査者로서 資格이 監査契約에 制限된다면, 그 會社의 從屬會社및 持株會社(the company's subsidiary & holding company)의 監査者로서 契約條件에서도 資格이 박탈되게 된다.

美國의 AICPA는 監査者나 그 파트너가 監査契約期間中이거나 財務諸表에 대한 監査意見을 表現하는 경우에 發起人·債權者·常任 또는 非常任理事 또는 雇傭人과 같은 企業에 關係를 맺고 있다면 獨立性에 維持되지 않는다고 記述하고 있다.

## 5. 經營諮問과 獨立性

獨立된 公認會計士들은 經營諮問을 企業에 提供하는 것이 公式的으로 認定되는 많은 國家에서 發展을 거듭하고 있다. 다만 어떤 部門에 대한 相談에 應하느냐에 대한 것은 問題視되기도 하였지만 一般的으로 研究와 發達에 基盤을 두고 位相을 向上시켜서 變化하여 왔다. 따라서 現在 여러가지 樣相에서 思考의 造化는 缺乏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一致하고 있다. 美國의 公認會計士들은 會計業務의 範圍를 크게 擴張하여 왔고, 英國·濠洲·카나다에서도 美國과 같이 大企業을 中心으로 經營 service가 엄청나게 增加하고 있다.

따라서 企業의 活動에서 獨立을 漸次 減少시키면서 隨伴되는 問題點들은 獨立된 監査者로서 客觀性 助言(advising)에 대한 責任感和 公共性에 대한 疑問·適性和 專門化의 問題등이 發生하고 있다. 이는 “監査者가 企業에 助言을 하는 것이 經營政策의 樹立 및 執行에 參與하지 않는 한 自身の 獨立性에 損傷을 가져온다.”고 볼 수도 있다. 즉 1961年 4月 AICPA는 CPA가 그들의 適性和 倫理的 基準, 責任感에 따라 經營業務의 모든 分野에 能力을 培養하여 業務를 遂行하여야 完全한 機能을 擔當하는 것이라고 定義하고 있다.<sup>5)</sup> 그러나 Carey와 Doherty는 監査者の 證明 機能과 經營業務 諮問活動은 根本的 兩立性은 없다고 한다.<sup>6)</sup> 그리고 經營業務活動들은 研究·調査·助言의 形態로 나타나고 經營意思決定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經營業務에 있어서 獨立된 會計監査者가 慣例적이고 一般的인 活動을 主導하는 平凡한 原理에 따라 支配되어야 한다. 이는 銀行家, 株式仲買人 및 監事·辯護士와 같이 職業的 專門家の 機能이나 存在理由가 아주 다르다는 것을 認識해야 한다. 獨立性的 立場에서도 마찬가지다. 1957年에 英國 會計士協會의 前議長인 Thomas Robinson은 報告書에서 다음과 같이 陳述하고 있다.

企業에 대한 公認會計士의 經營活動에 助言을 한다는 事實이 監査者로서 獨立性的의

註 5) By-laws & Code of professional Ethics,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1964, p.25.

註 6) Carey and Doherty, The Concept of Independence, p.42.

缺乏을 暗示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지만 公認會計士가 經營에 參與하고 執行決定에 共同分擔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業務의 擴大는 그의 獨立性을 損傷시킬 것이다. ... 가장 效效率的 助言은 獨立性을 維持하면서 企業의 業務에 대하여 專門的 知識과 方法을 통하여 租稅問題·財政·會計 시스템 및 內部統制등의 問題에 經營 Service가 考慮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方法들은 오랜기간에 걸쳐서 英國과 그밖의 나라에서의 慣習的 經驗이 監査者들에 의하여 監査報告書를 作成하는 獨立性을 喪失하지는 않아 왔다.

經營諮問 service分野에서 發生되는 倫理的 問題들은 아주 複雜하다는 것을 認識하면서 英國 會計士協會는 經營 Service 活動部署를 分擔하여 會員들이 案内書를 發刊하였다. 廣告나 탄원서 작성법, 株式會社의 樣相, 企業에서 經營諮問擔當部署 및 諮問方法, 倫理的 要望事項, 다른 會計士에 參照가 될 業務등의 8가지 規制를 制定하였다.

Rule 28도 다른 州政府에 模範이 된 Ontario Institutet에서 마련된 것을 公式的 基準으로 認定하여 다음과 같은 重要的 項目을 包含시키고 있다.

- ① 構成員은 會計分野나 他業務라도 經營諮問의 業務나 現場에 各部및 課에서 業務를 遂行할 수가 있다.
- ② 構成員은 會計實務에 關聯된 어떤 것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③ 監査契約을 체결한 監査者에게 株式會社나 個人企業은 經營諮問委員의 위촉 사실을 우선적으로 먼저 通知하여야 한다.
- ④ 經營相談을 하는 상담원은 企業에 대하여 會計士協會의 職業倫理規定을 하는 基準에 따르지 말고 企業을 保護하여야 한다.

1961년에는 美國公認會計士會가 날로 增加하는 經營諮問의 顧問으로 經營에 관한 會計 및 相談의 特別한 用役을 提供하였다. 이러한 業務는 範圍와 特性이 多樣하기 때문에 會員들에게 規則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힘들지만 다음과 같은 一般的인 原理에 따라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 ① 會員들은 수행하고 있는 業務에 대하여 責任感을 가지고 經驗과 訓練에 의하여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 ② 會員들이 다른 分野의 專門家의 意見을 必要로 하는 경우 그들의 決定이나 判斷에 따르지 말고 專門家로서의 發見事項을 使用하여 企業에 報告書나 討論事項으로 明確하게 하여야 한다.
- ③ 經營諮問業務에 適用된 倫理는 會員이 맡게된 다른 業務에도 똑같이 適用되어야 한다.

財務管理와 組織計劃및 實行 其他 經營活動에 대한 助言, 土地計劃, 垓地, 租稅, 業

務등에 대한 諮問活動의 보수가 濠洲의 보수가 濠洲의 경우 총수수료의 8%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國營企業의 경우에는 13%가량 이나 된다.

#### IV. 우리나라 監査基準上的 獨立性

우리나라 會計監査基準의 一般基準 第2項은 「監査人은 監査職務에 關係되는 모든 事項에 대하여 항상 羈獨立性和 公正不偏의 態度를 견지하여야 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 條項은 監査人이 獨立不羈의 第3者로서 항상 公正 不偏한 態度로 會計處理 事項 및 財務諸表의 表記事項을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에 準據하고 있는가의 當否를 監査人으로서 監査證明書에 意見을 表明하도록 하는 規定이다. 즉 監査人이 監査對象인 會計事實을 認定하고 會計處理의 適否를 判斷하여 財務諸表의 妥當性에 대한 自己의 意見을 表明하는데 있어서 主體的이고 精神的 態度의 獨立性을 가지고 公正不偏한 立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強調한 것이다.

한편 日本의 會計監査基準中 一般基準도 「監査人은 事實의 認定과 心理의 判斷 및 意見을 表明하는데 있어서 항상 公正不偏의 態度를 保持하여야 한다」라고 規定하여 監査人의 主體的이고 精神的 獨立性이 強調되고 있으며, 특히 經濟的인 獨立性의 內容이 우리나라와 같이 一般基準 第1項中 「當該 企業에 대하여 特別한 利害關係가 없는 者……」로서 二重의 規定으로 兩條件에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이의 構造를 살펴보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第1의 原則은 經濟的 獨立性, 第2의 原則은 精神的 獨立性으로 두가지로 합하여 獨立性의 公準(convention of independence)을 成立시키고 있는 것이다. 精神的 態度에 대한 獨立性은 獨立性의 基本이 되는 것으로서 다음 3개 事項을 構成要素로 하는 것이다.

첫째로 監査는 會計記錄과 事實의 對照가 主要한 內容을 이루고 있는데, 去來事實 이 올바르게 記錄되고 있는가의 與否, 그것을 立證하는 證憑이 있는가, 財務諸表에 記載하고 있는 財産의 實在性 여부등의 事實을 認定하고 있는데 있어 監査者의 偏見이 없고, 또는 公正한 態度로 監査의 結果를 導出하는 事實의 認定에 대한 公正不偏의 態度를 수가 있다.

둘째로 財務諸表는 會計事實이 올바르게 記載되지 않으면 價値가 없고, 會計事實은 物理的 事實과 달리 判斷의 所産이기 때문에 會計處理에 대한 公正한 判斷이 要請되기 때문에 處理의 判斷에 따르는 公正不偏의 態度를 들 수가 있다.

셋째로 監査의 結果는 監査報告書의 手段으로 報告되어지는데 財務諸表에 대한 意

見의 表明이다. 監査人은 이 意見에 대하여 責任을 져야하며, 또한 다른 사람의 支配干涉을 받지 않는 意見의 表明을 하는데 대한 公正不偏의 態度를 들수가 있다.

이와 같이 日本 會計監査基準의 一般基準中 獨立性의 原則은 監査基準 設定趣旨에서 밝힌것처럼 “公正한 判斷을 내리는 監査人은 依頼人이 信賴할수 있도록……”<sup>7)</sup> 利害關係者에 信賴感있는 會計情報를 주는 監査人의 姿勢로서 獨立性을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會計監査基準 自體가 監査者의 獨立性을 制限하거나 無視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監査者의 自律性에 依賴하는 效率的인 것이라고 主張하는 事例도 있다. 즉 效果的인 監査基準의 制定은 不可能할 뿐만아니라 不必要한 것이며, 오히려 公認會計士의 獨立性을 破壞하고 나아가 公認會計士의 地位를 弱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였다.<sup>8)</sup>

이에 대하여 美國의 경우는 會計監査基準中 一般基準 第2條에서 「一切의 委託된 事項에 관하여 監査人은 公正不偏의 態度를 保持하여야 한다」라고 規定하여 監査人의 獨立性이 監査基準에 準據하여 強調되어야 함을 意味하고 있다. 즉 다시말하면 監査의 獨立性을 維持하기 위하여 個人 事務所보다는 法人은 아니지만 協同組織의 團體 (Association)로서 Partnership의 形態가 殆半을 이루고 있다. National Firm이나 Local Firm의 形態를 이루게 된 背景은 1890년에 Common Law의 하나로 partnership 法(The English Partnership Act)이 英國에 制定된 것을 美國이 1914년에 導入하여 統一 Partnership 法(Uniform Partnership Act)이 美國 50個州중 38個州가 採擇하면서 시작되었다. 統一파트너쉽법은 法律로서 拘束力과 強制力을 지니는 것은 아니어서 各州에서 法律로 採擇하지 않는 한 準則程度의 性格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Firm의 方針에 따라 Partner는 活動하게 되고 그에 따른 義務와 責任도 Senior partner나 Junior partner가 區別없이 共同으로 連帶하여 要求되게 된다. 그러므로 監査者가 個人的으로나, 所屬되어 있는 Firm으로서 充分한 獨立性을 堅持할수가 있는 것이다. 즉 美國의 統一法은 Parther는 Partnership 內에서 共同所有者로서 事業經營및 業務執行에 있어 平等한 權利를 가진다(製18條e)라고 規程하고 있는 것이나 監査에 從事하는 者가 높은 道德心에 따른 精神的 獨立性을 維持하기 위하여 被監査會社의 株式을 1株도 所有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確固한 慣習으로 되어 있으며, 監査에 從事하는 公認會計士 뿐만아니라 所屬된 Firm의 모든 Partner도 被監査會社의 株式을 所有할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Firm이 企業의 株式을 所有하고 있는 者는 전부 賣却할 것을 勸告한다.

註 7) 黑澤清, 監査基準解説, 森山書店 1957, p.133.

註 8) 蘇眞德, 우리나라 會計監査基準에 대한 考察, 經營論叢 第Ⅷ卷, 1973.

## V. 結 論

會計監査基準은 그 自體가 監査實務에서 慣習으로 發達한 것 중에서 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하다고 認定되는 것을 歸納的으로 整理한것으로, 監査人에게 設定된 目標達成을 위하여 遵守하여야 하는 規範으로 認定된 것이다. 따라서 監査實務를 妥當한 方向으로 誘導하려는 使命이 주어진 것으로 監査人에게 賦與된 監査環境의 個別的인 特殊事情下에서는 標準化되고 統一된 監査基準의 適用은 困難하다. 監査人은 超人間的인 活動을 할 수가 없고, 期待하여서도 안된다. 이에 監査者가 會計活動에 관한 眞實을 말할수가 있고 設定된 理想과 目標의 達成을 위하여 努力을 다 하는 獨立性을 維持하고 發展시키는 것이 重要하다고 할수가 있다.

監査라는 職業自體가 自己規制나 自己調節을 통하여 狀況에 適合한 節次가 判斷의 重要性을 해치지 않는 範圍內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精神的 獨立性和 財政的 獨立性, 즉 名目上 및 實質的인 獨立性을 維持하면서 어느 程度의 彈力性있고 融通性있는 節制가 必要한 것이다. 基準自體가 지나치게 嚴格하고 固定으로 適用되는 것과 지나치게 細密한 部分까지 規制되는 것은 피하여야 할것이다. 이것은 마치 教育目標가 “바람직한 人間像”으로 理想的이면서 理論的으로 規定하고 있지만 實際로 現實社會의 指導原理로서 모든 사람에게 適用될수 있는 抽象的 概念의 普遍化이다. 즉 特定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調整의 基準으로 자연스럽게 受容된 人間의 갓가지 行爲에 대한 要約된 概念으로 아주 높은 水準의 一般化를 意味하는 것이다. 따라서 獨立性에 대한 原則도 會計監査活動에서 제일 重要的 概念으로 監査意見의 形成에 있어 커다란 影響을 주고 있지만 지나치게 詳細하게 規定하는 것은 오히려 監査者의 監査活動을 制限하거나 抑制하는 結果가 發生할 수도 있다.

또한 抽象的이고 概念的인 規定은 監査基準이 概念的으로 表示되어 現實的인 狀況이 考慮되지 못하는 短点を 表출할 可能性이 內在하게 됨으로 妥當性和 效率性을 誘導하기가 어렵다. 各國의 比較에서 찾아 볼수 있는 바와 같이 獨立性은 폭넓은 特性을 強調하면서 增加하는 利用者의 要求를 受容하여야 할것이며 監査者들에게 계속적인 訓練과 教育을 통하여 資質을 向上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多樣하고 增加하는 利用者의 欲求를 充足시키기 위하여 業務의 範圍와 特性을 詳細하게 規定을 만드는 것보다는 一般的 原理를 強調하면서 職業倫理的 側面을 強化하여 獨立性에 損傷을 가져와서는 안된다.

會計監査基準의 自體가 앞에서 指摘한 것처럼 實務經驗의 歸納的 接近이므로 우리나라의 基準이 美國이나 日本의 基準을 直輸入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現實에 適

합한 基準의 設定은 우리의 經濟社會의 要請과 많은 實務經驗을 土臺로 作成되어야 한다.

이는 美國의 監査基準이 1929年の 大恐慌과 1932年 A. B Kreuger & Tool Co. 事件과 우리나라의 경우도 1962年の 證券去來法規定과 株式配當保障法에 따라 會計監査基準의 必要性이 認識되었지만 實際로 實務經驗의 蓄積에서 制定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獨立性的 原則도 앞으로 韓國的 經濟環境과 利用者의 要求에 부응하기 위한 改正과 補完이 따라야 한다.



## 參考文獻

1. 李正浩譯 Michael Chatfield, 會計思想史, 經文社, 1988.
2. Niehus Rudolph J., Generally Accepted Auditing Principles in German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ccounting Education and Research 1969.
3. R. K. Mautz & Hussein A. Sharaf, The Philosophy of Auditing, George Banta Company Inc., 1964.
4. E. Stamp and M. Moonitz, International Auditing Standards, Prentice-Hall International Inc., 1978.
5. D. N. Riechiute, Auditing-Concepts and Standards, South-Western Publishing co., 1982.
6. R. D. Fitzgerald 外 2人, International Survey of Accountional Price Waterhouse, 1980.
7. Michael J. Pratt, Auditing, Longman, New York, 1987.
8. Staub, Walter A., Auditing Developments during the Present Centu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42.
9. Carey and Doherty, The Concept of Independence.
10. J. L. Rawnsley, The Ethical Basis of the Profession
11. Beck, G. W. The Role of the Auditor in Moodern Society, An Empirical Appraisal, Accounting and Business Research, 1973.
12.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Codification of Auditing Standards and Procedure, AICPA, 1972
13. By-laws and Code Professional Ethics,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 1964.
14. AICPA, Independence Rule
15. Paterson, Christopher B, Independence and the Auditor, Canadian Chartered Accountant, 1970.
16. 石田三郎, 監査意見形成論, 中央經濟社, 1988
17. 森實, 近代監査の 理論と制度, 中央經濟社, 1967